친 권 자 동 의 서

만 18세 미만 근로자용

1. 연소자**(**근로자**)** 인적사항

성 명		생년월일	년 월 일
연 락 처		학교 / 학년	

2. 친권자 또는 후견인

성 명		관 계	□ 부 □ 모 □ 후견인
연 락 처		주 소	

3. 근무 예정 내용

사업장명		대 표 자	
담당 업무			
근무 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근무 시간	: ~ : (휴게시간), 주 일 근무		

※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·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,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·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(근로기준법 제69조). 18세 미만은 22:00~06:00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(같은 법 제70조 제2항).

위 연소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친권자(후견인) : (서명 또는 인)

※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. 이 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기본증명서)를 준비하세요.
※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제한되며,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(근로기준법 제64조).
※ 이 동의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. 근로계약은 연소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고(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),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연소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(같은 조 제3항). 18세 미만자는 도덕상·보건상 유해·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(제65조 제1항).